

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이용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중 “여성복지과장”을 “여성정책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

제8조제1항중 “1차에 한하여”를 삭제한다

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.

제11조중 “사회복지국장”을 “여성정책관”으로 하고 “생활지도계장”을 “여성정책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위원회의 구성)①~③(생략)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<u>여성복지과</u>장이 된다.</p> <p>제8조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<u>1차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 <p>제10조(기금의 운용관리)①(생략) ②기금은 <u>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</u> 기금중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에 <u>예치하여</u> 관리한다.</p> <p>제11조(기금관리공무원)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<u>사회복지국</u>장으로, 기금출납원은 <u>생활지도계</u>장으로 한다.</p>	<p>제5조(위원회의구성)①(현행과같음) ④ ----- -----<u>여성정책담당</u> <u>사무관</u>-----</p> <p>제8조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기금의 운용관리)①(생략) ②기금은 <u>도금고에</u> 예치하여 관리한다.</p> <p>제11조(기금관리공무원) ----- -----<u>여성정책관</u> -----<u>여성정책담당사무관</u> -----</p>